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알기쉬운 질의 응답 (FAQ)

- ※ 해당 FAQ는 2026년 3월 24일자로 업데이트된 것으로,
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에서도 확인 가능함
- * 식품안전나라 > 전문정보 >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>
알기쉬운 질의 응답(FAQ)

Q1

왜 개와 고양이만 동반출입이 가능한가요?

- 음식점은 많은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방문하는 다중이용 시설임을 고려하여
 - 사람과 동물, 동물 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의 치료, 예방접종 등이 비교적 잘 연구 및 관리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였음

Q2

맹견은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?

- 영업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맹견 등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입문에 명확하게 게시하여야 함
- 이 외에도 영업소의 사정에 따라 대형견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사실을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

동물보호법 제2조(정의)

5. “맹견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.

- 가.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
- 나.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

제2조(맹견의 범위)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
2. 핏불테리어(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)와 그 잡종의 개
3.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
4.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
5.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
제23조(보험의 가입 등)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, 보험의 종류,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>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
2.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

Q3

비반려인은 위생상, 건강상 우려가 있는데 관리방안은?

-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
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
 - 알레르기 등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손님 등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음
- 비반려인 등은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 표지판 등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음

Q4

기존에 음식점 등을 운영중인데, 시설기준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등 영업을 가능한지?

- 휴게음식점영업·일반음식점영업·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영업을 가능함
 -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불입의 사전검토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정부(위생부서)에 문의하시면 사전컨설팅이 가능함
- 구체적인 절차는 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 >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> 교육·홍보 메뉴의 1번 「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」을 참고하시기 바람

Q5

영업장 전체가 아닌 객석 1개만 운영하려는데도 관련 규정을 다 지켜야 하나요?

-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영업장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손님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지켜야 함
 - 일부 객석만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일부 객석에 맞는 위생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시면 됨

Q6

영업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?

-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영업장 내로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함

Q7

영업장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?

- 음식점 등은 음식을 섭취하는 곳으로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한 식품의 위생상 문제 및 물림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

Q8

반려동물의 목줄을 풀어두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싶은데, 왜 안되나요?

-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업소임
 - 음식의 위생·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
- 만약, 반려동물간 놀이를 위한 공간을 원하시는 경우, 식품접객업소와 분리(벽이나 층으로 구분)된 공간을 두어야 함

Q9

조리장, 식재료 보관창고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석 등과 분리해야 하나요?

- 조리장은 분리할 필요는 없으며 반려동물이 들어 가지 않도록 조리장 출입구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면 됨
- 칸막이의 종류, 크기 등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

Q10

**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들어간 경우
행정처분 기준은?**

- 조리장은 음식물을 조리·취급하는 장소로서 식품 위생관리가 중요하며 영업자는 관리의무가 있음
-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Q11

**반려동물이 이동한 경우 영업정지 5일인데 손님이 반려동물을
풀어놓은 경우도 처분받나요?**

- 영업자가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인하고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
- 다만, 영업자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이동 제한을 안내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

Q12

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?

-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반려인, 비반려인 및 반려동물이 함께 머무르는 곳으로 소비자와 반려동물, 반려동물 간의 물림·충돌 등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함
-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,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임

Q13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아닌데 손님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온 경우 무조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?

-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, 어린이, 어르신 등 다양한 소비자가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므로, 식품위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아닌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다만, 영업자가 반려동물 출입금지를 안내하고 통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CCTV 영상, 다른 손님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이 경우 영업자는 손님의 영업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식품 위생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Q14

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목줄고정장치, 케이지 등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?

-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목줄걸이 고정 장치, 케이지, 반려동물 전용 식탁 또는 의자, 별도의 전용공간 중 1개 종류만 구비하여도 무방함
- 모든 손님이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강아지용 유모차에 두거나 안고 있는 경우 등 이동을 관리할 대상이 없다면 목줄고정 장치 등을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

케이지 이용	강아지용 유모차 이용	손님이 안고 이용
		

Q15

**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종류가 많은데 영업자가 반드시 확인
하여야 하는 백신 종류가 있나요?**

- 영업자가 음식점에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
해야 하는 이유는 광견병* 등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소비자를
보호하고 반려동물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

* ‘광견병’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조의 따른 제2종 가축 전염병

-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외
종합백신 등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

Q16

**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정해진
크기나 종류 등 규격이 있나요?**

- 표지판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출입문에 부착하면 됨.
다만 소비자가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임을 쉽고 명확히
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부착하시기 바람
- 참고로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활용
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표지판 시안을 제작하여 식품안전나라*에
게시함

* 식품안전나라> 전문정보>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> 교육·홍보> 번호 4.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활용 시안

Q17

반려동물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나 주기를 확인해야 하나요?

-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(동물의 적절한 사육·관리 방법 등)에
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
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
- 따라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자(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)는
예방접종 유효기간, 접종 주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음

Q18

영업자 개인 소유의 반려동물은 상주할 수 있는지?

-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
- 「식품위생법」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위한 시설 및 준수사항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자 개인 소유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함

Q19

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위한 시설 및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?

-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
-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만 관련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면 됨
-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음

Q20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아닌 음식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?

-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영업소의 외부 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업소(영업장)임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을 게시하여야 함
- 소비자는 영업소 입구의 표지판을 확인하고 음식점 이용 여부를 선택하시면 됨

Q21

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리는 쓰레기통을 영업장 안에 비치하여야 하나요?
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에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쓰레기통의 비치 장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
- 위생안전과 소비자의 쓰레기통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쓰레기통 비치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면 됨

Q22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가요?

- (신규 영업자)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서의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란에 체크하여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하여야 함
- (기존 영업자)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 사항은 없으며,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위한 시설 및 준수사항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신고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여도 됨

- 참고로 지자체 사전컨설팅*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할 수 있음

* 영업자가 위생·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→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→ 미흡·보완사항 조치 완료 → 동반출입 개시

Q23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필요한 안내 표지판 등 시설 구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식약처는 지방정부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위생물품* 또는 해당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시행한 바 있음
- * 조리장 등 식품출입시설 입구 칸막이, 매장 출입구 반려동물 출입 안내 표지판, 목줄 등 고정장치, 음식물 뚜껑·덮개, 전용 쓰레기통
- 다만,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지원 절차·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Q24

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의 털이 날리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?

- 「식품위생법」상 반려동물의 털은 이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의 조리·제공 음식에서 발견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
-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시설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지켜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

Q25

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소비자의 이용 공간과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는 소비자의 이용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나요?

-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일반 소비자(비반려인)의 이용 공간과 반려동물을 동반한 소비자(반려인)의 이용 공간을 분리할 필요는 없음

Q26

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현재 예방접종은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·수첩 (원본, 사본 또는 사진), 반려동물 건강앱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음

구분	항목	내용	비고
예방접종(접종자)	1	Heartgard(1-1kg/Blue)	2020-05-05
	2	Heartgard(1-1kg/Blue)	2022-05-28
	3	Heartgard(1-1kg/Blue)	2022-06-28
	4	Heartgard(1-1kg/Blue)	2022-07-28
	5	Heartgard(1-1kg/Blue)	2022-08-28
	6	Heartgard(1-1kg/Blue)	2022-09-28
	7	Heartgard(1-1kg/Blue)	2022-10-28
외부기관	1	Frontline(1-10kg)	2017-11-04
	2	Frontline(1-10kg)	2018-07-21
	3	Frontline(1-10kg)	2019-06-01
	4	Frontline(1-10kg)	2019-06-25
	5	Frontline(1-10kg)	2019-09-02
	6	Frontline(1-10kg)	2019-09-29
	7	Frontline(1-10kg)	2020-04-11
	8	Frontline(1-10kg)	2020-04-29
	9	Frontline(1-10kg)	2021-04-30
	10	Frontline(1-10kg)	2021-06-04
	11	Frontline(1-10kg)	2021-07-12
	12	Frontline(1-10kg)	2021-08-14

동물병원 발급 증명서(예시)



예방접종 수첩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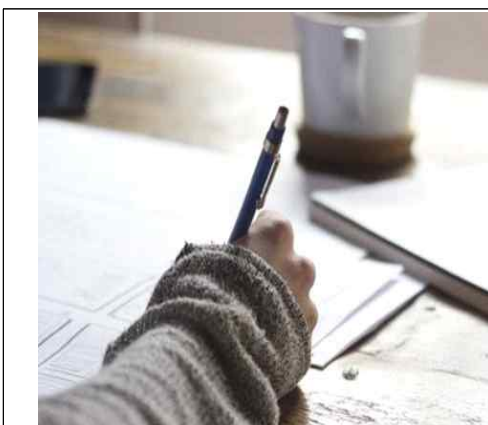


반려동물 건강앱(예시)

- 추가로 수기대장 또는 QR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동반자가 기재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함

- ① [수기대장]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동반자가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기재
- ② [QR 코드] 반려동물 동반자가 영업장에 마련한 설문폼/QR로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입력

※ QR 제작방법은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전문정보 >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> 교육·홍보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



수기대장



QR 기록

Q27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일정한 식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만 있을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음

- 참고로 전용 의자는 반려동물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함

케이지 사용하는 경우	일반의자 사용	손님이 안고 있는 경우
		

○ 손님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, 반려동물과 다른 손님이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유지*하여야 함

* 반려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보다 식탁 간격이 더 떨어져 있으면 됨

①	②	③
		

Q28 식탁 간격은 1m 이상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나요?

- 식탁 간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함
 - 이동 제한 장치의 종류, 영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 물림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식탁 간격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

Q29 반려동물 이동 제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·구비하여야 하나요?

- 모든 손님이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강아지용 유모차에 두거나 안고 있는 경우 등 이동을 관리할 대상이 없다면 목줄고정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



- 또한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 고정장치, 케이지, 의자 등 장치를 모두 갖추 필요는 없으며 1개 종류만 구비하는 것도 가능함
- 참고로 전용 의자는 반려동물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함



Q30

조리장(주방) 등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?

-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함
-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음
 - 다만, 칸막이·울타리의 재질, 크기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음

<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 사례 >



Q31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

-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영업을 가능하며, 지방정부(지자체)의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
- 다만,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영업자가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
 - 따라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

Q32

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, 즉시 단속되나요?

-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올해 7월까지의 현장과의 소통·협력을 지속하고,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전컨설팅에 집중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

Q33

목줄걸이 고정 장치 대신에 식탁, 의자 등에 반려동물이 착용한 목줄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

-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을 구비하도록 한 것임
- 따라서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면 반려동물이 착용한 목줄을 식탁, 의자 등에 묶어서 고정하는 것도 가능함

Q34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손님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?

-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,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등과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
- 영업자가 표시·안내하여야 하는 안내문의 견본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 >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> 교육·홍보 메뉴의 9번 「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내 안내문」에도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람

Q35

반려동물용 식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나요?

- 반려동물용 식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님
-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반려동물용 식기를 제공하는 경우,
반려동물용 식기에는 “반려동물용”임을 표시하고, 손님용 식기와
구분하여 보관·사용하여야 함

Q36

반려동물용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전용 개수대를 설치해야 하나요?

- 반려동물용 식기 세척을 위한 별도의 개수대를 구비 할 의무는 없음
- 다만, 세척과정에서 반려동물용과 손님용 식기가 혼재되어 이물
혼입 등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,
 - ① 별도의 개수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,
 - ② 같은 개수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. 이 경우 반려동물용과
손님용 식기를 따로 구분하여 세척하고, 세척 전·후에는
개수대를 깨끗이 하는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함

Q37

오픈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도 덮개를 사용해야 하나요?

- 음식 제공 시 뚜껑·덮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손님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안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
 - 픽업대(식탁)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,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함
 - ① 픽업대(식탁)에 뚜껑·덮개 등을 비치하거나,
 - ② 손님에게 뚜껑·덮개가 필요한지 문의 후 제공하거나,
 - ③ “뚜껑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!!”라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는 것도 가능함
 - 참고로, 포장된 음식물 등 이물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뚜껑·덮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
- * 예) 병제품, 개별 비닐 포장된 빵 등

Q38

기존 운영 중인 음식점에서 사전컨설팅을 받지 않고 식품안전나라에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
- 식품안전나라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소개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(새울시스템)의 음식점 관련 세부정보에 “반려동물 출입”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야 함
-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을 ①운영하고, ②관련 정보가 식품안전나라에 표출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위생 담당 부서에 연락 후 반려동물 출입 업소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람

Q39

**식품안전나라의 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” 으로 소개
[표출]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?**

- 식품안전나라에 “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”으로 소개*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(서울시스템)의 해당 음식점 관련 세부정보에 “반려동물 출입”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야 함

*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지도기반 안내 : 식품안전나라 누리집
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전문정보 >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
> 지도검색

- 지방정부의 사전 컨설팅을 받으신 경우, 관할 지방정부에서 해당 영업소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임을 알고 있으므로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것임
- 영업자 스스로 기준을 갖추신 경우, 관할 지방정부에서 귀하의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임을 알지 못하므로 관할 지방정부(위생 담당 부서)에 연락하신 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됨

Q40

**식품안전나라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에 표출되기
위해서 반드시 사전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?**

- 식품안전나라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에 표출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은 필수 또는 의무가 아님

Q41

테이크 아웃 전문점에 결재 또는 제품 픽업 등을 위해 잠시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?

-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경우 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”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-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동안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생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기준만 지키면 될 것으로 판단됨
-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용 위생·안전기준
 - ①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표지판 게시 (“테이크아웃만 가능” 등 소비자 안내 표시 추가), ② 예방접종 여부 확인(QR 등 사용 가능), ③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, ④ 음식 픽업대에 뚜껑·덮개 구비하거나, 또는 ‘뚜껑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’라는 문구를 게시, ⑤ 진열 중인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사용, ⑥ 영업장 내에 소비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함
- 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표시·안내하여야 하는 안내문(건본)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메뉴판이나 영업장에 부착·게시하는 등 활용하시기 바람

[붙임]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내 안내문 (건본)

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☒ 저희 매장은 대형견의 출입이 제한됩니다.

※ 영업자가 매장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(반려동물 종류, 크기)

☒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됩니다.

☒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이동이 제한됩니다.

☒ 픽업대에 비치된 음식물 뚜껑·덮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(또는) 뚜껑·덮개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☒ 기타 영업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추가 가능

Q42

손님용 의자 위에 방석이나 매트 깔고 반려동물을 두는 것이 가능하나요?

- 손님용 의자 위에 반려동물만 사용하는 방석이나 매트 등을 깔고 반려동물을 두는 것이 가능함
- 손님용 의자 위에 반려동물용 방석이나 매트 등을 사용한 이후에는 손님용 의자에 대한 소독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손님용 의자에 매트·방석 등 사용



Q43**손님이 주문, 화장실 이동 시 반려견과 함께 이동해야 하나요?**

-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에서는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됨
- 해당 규정*의 취지는 소비자가 음식 주문을 하거나, 화장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함
- *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[별표17] 7. 5) 손님이 음식의 주문,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고, 그 외의 경우 경우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등 영업장 내 안전관리를 할 것
- 따라서, 반려동물이 목줄걸이 고정 장치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었다면, 소비자가 화장실 등을 가는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지 않아도 됨

Q44**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입양확인서로도 가능한가요?**

- 현재 예방접종은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·수첩 (원본, 사본 또는 사진), 반려동물 건강앱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음
- 추가로 수기대장 또는 QR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동반자가 기재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함
- ① [수기대장]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동반자가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기재
- ② [QR 코드] 반려동물 동반자가 영업장에 마련한 설문폼/QR로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입력
- ※ QR 제작방법은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전문정보 >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> 교육·홍보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
- 또한 입양확인서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